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체계 개편

□ 현황

- 일부 컨설팅업체 및 생산자단체들의 특이 사례로 인한 사업 수요 축소 및 포기농가 증가
 - 보조사업 단가(8백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단가로 계약(2 ~ 6백만원)
 - 별도 보조사업을 통해 단체로 저렴하게 계약(농가당 2 ~ 5백만원 수준)
 -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접근하여 자부담 이하로 컨설팅 계약 시도
- ※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운영('16.4~7월) 및 관계기관 협의회(8.19), 지자체 및 협회 등 의견조회(컨설팅협회 9.2, 10.14, 10.21, 생산자단체 9.9, 지자체 9.29)

□ 문제점

- 축종 및 다양한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단가 적용(8백만원)
- 단체별 공동 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개인만 지원
- 지자체를 통한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부재
- 업체가 발굴한 농가가 해당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여건 부재
 - * 자부담 대납 및 부실 컨설팅 방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평가로 인해 업체들이 보조사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접근

□ 개선방안

- 축종별 단가 차등화 및 농가의 추가 자부담 완화, 사후관리 강화
 - 돼지, 젓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 도축장은 현행 유지(8백만원)
 - 한·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는 6백만원으로 하향 조정(집유장은 5백만원)
 - 각종 수수료 및 입간판 설치 비용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농가별로 1백만원 내외의 자부담 완화 효과), 지자체를 통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 브랜드 경영체별 단체 컨설팅 지원제도 도입
 - 농가가 단체로 신청할 경우 기본비용 + 농가당 추가금액으로 지원
-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도입 및 퇴출기준 강화, 컨설턴트 등록제 시행
 - 업체 인증 및 취소기준 강화, 컨설턴트 등록 및 교육이수제 도입

〈세부 개편내용〉

① 업종·축종별을 고려한 컨설팅 금액 단가 조정(개정)

○ 업종·축종의 특성상 기록관리 및 현장 지도 정도를 반영하여 차등 적용

구 분		기 준		변 경	
		방문횟수	사업비	방문횟수	사업비
의무 작업장	도축장	10회	8백만원	12회 (신규는 16회)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회 (신규는 10회)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		10회 (사후관리 2회)	8백만원	10회 (사후관리 2회)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6회 (사후관리 2회)	6백만원

* 돼지, 젖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 : 한우 등에 비해 동물용의약품 많이 사용하여 기록 작성이 복잡하고 HACCP컨설팅 외에 질병이나 사양관리에 따른 컨설팅이 추가로 필요

○ 컨설팅 금액에 각종 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안내문 및 인증신청 수수료 등을 포함(도축장, 집유장 제외)하여 추가 자부담 완화

- 돼지·젖소·도축장 등 : (기존) 340만원 → (변경) 240만원(감 100만원)

- 한우·육계·오리 등 : (기존) 340만원 → (변경) 180만원(감 160만원)

② 단체 컨설팅 신청 제도 도입(신규)

○ 대상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4회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4회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 수 내 단체 컨설팅 내 농장 1건을 개인신청 0.5건으로 인정

* 기존 컨설팅사업과 지원 비율은 동일(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하며,
자부담은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③ 사후관리 컨설팅 도입(신규)

○ 대상 :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컨설팅 지원(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8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다과, 식사, 현수막, 재료비)), 다만, 심사수수료는 제외]

* 기존 컨설팅사업과 지원 비율은 동일(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하며, 자부담은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현장기술지원사업은 방문횟수 증가(2회 → 3회[하위 20%], 추가 방문 단가 20만원)

④ 컨설팅 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등록 관리 개선(개정)

○ 컨설팅 업체의 '등록'과 '선정'의 두 단계를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컨설턴트 교육 및 등록제도 도입

구분	현 행	개 정
진행 절차	컨설팅업체 등록(2월) 컨설팅업체 선정(3월) 권역별 복수 신청 가능	- 신청('16년11월) 및 인증평가('16년12월) - 업체 인증평가지 컨설턴트 등록 함께 진행 - 신청은 3개소(제주 제외), 선정은 최대 2개소
사업 추진 실적	없음	- HACCP 컨설팅 평가 및 만족도 조사사업 결과 반영 -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성적에 따라 0.1점씩 가점부여(최대 1점)
업체 관리	등록 및 선정 취소 기준 없음	- 업체(컨설턴트) 변경 및 취소기준 마련(취소 시 2년 이상 참여제한) - 인증업체의 관리 - 인증업체의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운영평가) 매년
업체 자격	없음	- 컨설팅업체 내 전문인력은 인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 - 도축장·집유장 분야도 내부인력 수의사 포함
컨설턴트 자격	없음	- 신규 컨설턴트는 전문교육 24시간 이상 이수·합격 - 기존 컨설턴트는 매년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합격 * '16.11월말에 인증원에서 신규 교육 실시 예정('16년에 한해 교육 이수자 인정, 경력 7년 이상은 기존 컨설턴트로 인정)
	내·외부 인력 등록	내부전문인력인 컨설턴트만 등록(외부인력 제외)

<참고1> 업종 및 축종별 기본방문횟수 조정에 따른 금액(산출 근거)

구 분	항 목	도축장		집유장		돼지 등		한우 등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인건비	소 계	4,666,895	70.6	2,734,289	55.1	4,018,556	60.8	2,734,289	55.1
	수의사	1,104,614	16.7	501,585	10.1	743,924	11.2	501,585	10.1
	컨설턴트	3,434,568	51.9	2,146,605	43.3	3,148,354	47.6	2,146,605	43.3
	보조원	127,713	1.9	86,099	1.7	126,278	1.9	86,099	1.7
경비	소 계	1,753,500	26.5	1,278,500	25.8	2,401,500	36.3	2,081,500	42.0
	여비	840,000	12.7	560,000	11.3	840,000	12.7	560,000	11.3
	유인물비	363,500	5.5	363,500	7.3	1,166,500	17.6	1,166,500	23.5
	회의비	150,000	2.3	75,000	1.5	75,000	1.1	75,000	1.5
	임차료	320,000	4.8	200,000	4.0	240,000	3.6	200,000	4.0
	교통통신비	80,000	1.2	80,000	1.6	80,000	1.2	80,000	1.6
	재료비	-	-	-	-	-	-	-	-
일 반 관 리 비		192,612	2.9	120,384	2.4	192,602	2.9	144,474	2.9
이 윤		661,301	-	413,317	-	661,266	-	496,026	-
총 원 가		6,613,007	100.0	4,133,172	83.3	6,612,658	100.0	4,960,262	100.0
공급가액		7,274,308	-	4,546,490	-	7,273,923	-	5,456,289	-
부가가치세		727,431	-	454,649	-	727,392	-	545,629	-
컨설팅금액(절삭)		8,000,000	-	5,000,000	-	8,000,000	-	6,000,000	-

<참고2> 단체컨설팅 금액(산출근거)

구 분	항 목	돼지 등 (집합교육8회 + 개인방문 4회)		한우 등 (집합교육4회 + 개인방문 4회)		1개농장 추가금액 (개인방문 4회)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인건비	소 계	4,018,556	60.8	2,734,289	55.1	961,980	38.8
	수의사	743,924	11.2	501,585	10.1	169,074	6.8
	컨설턴트	3,148,354	47.6	2,146,605	43.3	758,467	30.6
	보조원	126,278	1.9	86,099	1.7	34,440	1.4
경비	소 계	2,401,500	36.3	2,081,500	42.0	1,446,500	58.3
	여비	840,000	12.7	560,000	11.3	280,000	11.3
	유인물비	1,166,500	17.6	1,166,500	23.5	1,166,500	47.0
	회의비	75,000	1.1	75,000	1.5	-	-
	임차료	240,000	3.6	200,000	4.0	-	-
	교통통신비	80,000	1.2	80,000	1.6	-	-
일 반 관 리 비		192,602	2.9	144,474	2.9	72,254	2.9
이 윤		661,266	-	496,026	-	248,073	-
총 원 가		6,612,658	100.0	4,960,262	100.0	2,480,735	100.0
공급가액		7,273,923	-	5,456,289	-	2,728,808	-
부가가치세		727,392	-	545,629	-	272,881	-
컨설팅금액(절삭)		8,000,000	-	6,000,000	-	3,000,000	-

<참고3> 도축 및 집유 신규 작업장에 따른 금액(산출 근거)

구 분	항 목	도축장(16회 방문)		집유장(12회 방문)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인건비	소 계	7,360,737	74.2	4,666,895	70.6
	수의사	1,713,279	25.9	1,104,614	16.7
	컨설턴트	5,438,066	54.8	3,434,568	51.9
	보조원	209,392	2.1	127,713	1.9
경비	소 계	2,268,500	34.3	1,753,500	26.5
	여비	1,120,000	11.3	840,000	12.7
	유인물비	363,500	5.5	363,500	5.5
	회의비	225,000	2.3	150,000	2.3
	임차료	480,000	4.8	320,000	4.8
	교통통신비	80,000	1.2	80,000	1.2
	재료비	-	-	-	-
일 반 관 리 비		288,877	2.9	192,612	2.9
이 윤		991,811	-	661,301	-
총 원 가		9,918,114	100.0	6,613,007	100.0
공급가액		10,909,925	-	7,274,308	-
부가가치세		1,090,993	-	727,431	-
컨설팅금액(절삭)		12,000,000	-	8,000,000	-

<참고4> 사후관리 컨설팅 금액(산출 근거)

구 분	항 목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자체컨설팅	
		금액(원)	구성비(%)	금액(원)	구성비(%)
인건비	소 계	303,225	45.8	-	-
	수의사	11,272	1.7	-	-
	컨설턴트	286,214	43.2	-	-
	보조원	5,740	0.9	-	-
경비	소 계	340,000	51.3	728,000	100.0
	여비	140,000	21.1	-	-
	유인물비	200,000	30.2	200,000	27.5
	회의비	-	0.0	지원항목 : 교육비(강사로, 회의실임차료, 교통비, 교재, 다과, 식사, 현수막, 재료비 등) 관련 지출 서류 증빙	
	임차료	-	0.0		
	교통통신비	-	0.0		
	재료비	-	0.0		
일 반 관 리 비		19,297	2.9	-	-
이 윤		66,252	-	-	-
총 원 가		662,522	100.0	728,000	100.0
공급가액		728,774	-	728,000	-
부가가치세		72,877	-	72,800	-
컨설팅금액(절삭)		800,000	-	800,000	-